종합 계좌번호

일반금융소비자 확인서



1. !	투자성향에	적합(적정)하지	않은	삿포	거래	화인	(\square	화인 `	١
------	-------	----------	----	----	----	----	-------------	------	---

투자자 성향	(\	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	(등급 ())
TAA 68	(,	집합투자증권의 위험 등급	(등급 ())

- · 괄호 안 부분은 하단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명칭을 고객님께서 직접 기재 부탁드립니다.
- ※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
- 모든 금융상품

투자자 성향	공격투자형	적극투자형 위험중립		안정추구형	안정형			
금융투자 상품의 위험등급	매우높은위험 (1등급)	높은위험 (2등급)	다소높은위험 (3등급)	보통위험 (4등급)	낮은위험 (5등급)	매우낮은위험 (6등급)		

◉ 집합투자증권

투자자 성향	공격투자형	적극투자형	위험중립형	안정추구형	안정형
집합투자 증권의 위험등급	매우높은위험(1등급)~ 높은위험(2등급)	다소높은위험 (3등급)	보통위험 (4등급)	낮은위험 (5등급)	매우낮은위험 (6등급)

- 1.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"본인 판단하에 투자여부를 결정"하시기 바랍니다.
- 2.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*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
 - * 적합성 원칙 (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) : 소비자의 재산상황, 금융상품 취득·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,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
- 3.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'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
 - * 설명의무(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) :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
- 4. 투자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"투자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"됩니다.
- 5. 특히, 투자자의 성향에 비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"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※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 원칙* 대상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면담 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.
 - * 적정성 원칙(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8조) :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,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

2. 금융투자상품 위험고지 확인 (□ 확인)

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<u>투자원금 손실 가능성</u>이 있고, <u>일부 상품의 경우 (신용 및 파생상품 등)</u> 투자원금 이외의 추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주식, 채권의 경우 <u>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,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에 따른 가격변동과 투자대상자산의 이자율변동, 거래유동성 부족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</u>

파생상품의 경우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<u>지렛대 효과(레버리지 효과)</u>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

⇒ 1~2번 해당되는 항목에 ☑ 하여 주시고, 상기 사항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상품상세	날 짜	년	월	일	고 객 명	(인/서명)
□ 대리인에 의한 투자자 확인 시	주민등록번호				대리인성명	(인/서명)

* 본인은 상기 대리인에게 투자성향에 적합(적정)하지 않은 상품 거래확인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며,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.

□ 유선접수사항							담당자	책임자	부점장
일시		녹취번호		접수자		(인)			